

##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System in Korea

이상원\* · 박윤규\*\*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
| II.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과 업무영역 | V. 결 론         |
| III.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                |

#### 〈요 약〉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므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과정에서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민간조사, 민간경비, 자격제도, 교육훈련, 전문성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I. 서 론

21세기 사회는 모든 영역과 기능에서 빠른 변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영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윤리적·도덕적 가치관의 쇠퇴, 물질만능주의 팽배, 정보화·컴퓨터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 등에 의한 범죄의 급증<sup>1)</sup> 및 범죄의 광역화·기동화·흉포화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정부의 공권력과 형사 사법기능 만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의해 그 문제 해결책으로 자신들이 직접 나서거나 해결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불법,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법·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므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 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공인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특히 재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의료사건의 합리적 해결, 기업영업비밀(정보)의 보호, 보험범죄 조사, 미아 실종자 추적이 강조되고 있다(황정익, 2005,11-26). 이러한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을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 민영화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 만이 관계기관에 등록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전대양, 2006,1-26).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민간조사제도를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2005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33,122였고 검거인원은 1,969,8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연보. 2006.

## II.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과 업무영역

### 1.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

민간조사원(탐정)이란 영어로는 Private Investigator 또는 Private Detective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Investigation이란 세밀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내거나 혹은 어떤 것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나 단서를 추적하고 추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원(탐정)이 수행하게 되는 조사(Investigation)란 범죄의 존재와 특정한 부정행위, 사실여부 또는 확인, 개인의 특성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화된 근거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명 혹은 특정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확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Robert D .McCrie, 2001).

민간 조사원(탐정)이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손상철, 2005).

민간조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수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부국가(호주, 뉴질랜드 일부 주)에서는 Field Operators (FO:현장운영자)로 불리고 호주의 NSW주와 Queensland 주에서는 FO가 Private Inquiry Agent(사설탐정)로 불리기도 한다.

### 2. 탐정의 분류와 업무영역

민간조사원(탐정)의 업무와 역할은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이 관여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조사원은 자격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국가 승인기관이 인증한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분야별 일정교육의 이수 또는 경력에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영역별 전문탐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영역별 전문탐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이동영, 1999).

#### 1) 탐정의 분류

##### (1) 법률탐정(Legal investigator)

법률탐정은 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으로서, 변호사들의 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 피고인의 변호를 돕기 위한 증인 확보, 경찰과의 면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검토, 법정에서의 증언을 한다.

(2) 기업탐정(Corporate investigator)

기업탐정은 기업 등에서 의뢰인 회사의 내외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유무를 밝히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절도, 비용지출 내역의 허위사실, 상품선적 등에 있어서의 사기 등을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

(3) 재정탐정(Financial investigator)

재정탐정은 금전과 관련된 횡령, 사기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회계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나 횡령당한 회사자금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투자은행이나 변호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금거래에 연루되어있는 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며, 법원 등에서 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변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명의로 감추었을때 이를 추적, 숨겨놓은 재산 등을 찾아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4) 보험탐정(Insurance investigator)

보험탐정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행위 등 보험사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사실확인을 하거나 보험회사가 입을 피해를 구제해주는 업무를 행한다.

(5) 경비탐정(Store detective)

경비탐정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고용되어 시설내에서의 절도, 소매치기, 사기행위자를 검거하거나 내부직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직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업무를 행한다.

(6) 사이버 탐정(Cyber investigator)

사이버 탐정은 주로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불법행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 각종 자료의 수집, 불법행위의 감시, 위법행위자의 IP추적 등의 임무를 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한다(김원태, 2006, 41-49)

(7) 기 타

이들 외에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현상수배범의 소재파악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 뺑소니 차량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 해외도피사범의 소재파악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 등이 있다.

2) 탐정의 업무영역

현대사회에서 경찰, 검찰 등 국가공권력의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보충적으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

한과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범죄행위·위법·부당행위의 조사, 미아·실종자, 도난·분실된 재산의 소재 파악, 각종사건의 원인조사, 인적·물적 손해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의 파악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이동영, 1999) 이러한 경우의 전문가는 민간조사원(탐정)을 의미한다.

민간조사원의 영역은 넓고 그 역할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미국, 영국)의 경우 민간조사원(탐정)의 조사결과는 재판시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며, 민간조사원(탐정)이 국가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거나 정부기관에 고용된 때에는 공공영역을 대신해 증거수집이 가능하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도 조사활동이 가능하다(강영숙, 2007, 17-18).

선진국의 탐정업무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 탐정업무의 영역

* 감시	* 조정(채무청구의 경우)
* 재산의 소재파악, 추적	* 컨설팅
* 사이버 범죄	* 직원의 경력조사
* 화재사건	* 명 령
* 보험청구 또는 반대소송청구	* 공공기록조사(인구통계, 재산, 신용, 범죄, 채무, 교육)
* 사고(항공기, 차량, 건설, 산업, 개인 등)	* 독점금지활동
* 경쟁적인 정보수집	* 저작권 및 상표위반
* 비밀활동	* 근무지 위반 등
* 과실	* 실종자 소재파악
* 인수 및 합병	* 개인적 손해
* 거짓말 탐지기 조사	* 재산 및 순수가액청구
* 성희롱	* 재판준비
* 근로자의 배상	* 유용(타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
* 계약위반(사실과 가능한 손해의 결정)	* 산업 스파이
* 사기(부정행위)	* 부족 및 감소목록조사
* 해운업 조사	* 특허권 조사
* 채용조사	

자료: Robert D.McCrie(2001), Security Operations Management, MA:Butterworth Heinemann, pp.271-272.

### Ⅲ.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 1. 미국의 탐정제도

##### 1) 개 요

미국의 탐정제도는 도시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미국사회에서 활성화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찰제도나 형사 사법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탐정제도 역시 자기들만의 독특한 제도로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경찰시스템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탐정의 도움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탐정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지방 경찰제도가 자치체 경찰제도로써 각주가 상이하듯이 탐정제도 역시 각 주마다 자격요건, 면허유무, 시험제도 등이 다양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경우 탐정은 전직 경찰, 전직 법집행기관의 수사관출신, 군 헌병출신 등이 은퇴 후에 면허를 취득하여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경비원 부업(야간 경비원 Moonlighting)을 할 뿐만 아니라 사설탐정 면허를 취득하여 부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찰조직의 내부조사 및 시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조용철, 2006:119-121).

## 2) 탐정업의 정의와 자격요건

### (1) 탐정업의 정의

탐정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시간주의 예를 들고자 한다. 미시간주(Michigan State)의 사설탐정 인가법(Private Detective License Act)에는 사설탐정과 사설탐정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Private Detective License Act 338-833). 사설탐정(Private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보험손해 사정인이나 전문엔지니어와는 달리 비용, 보수, 기타의 보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인력공급을 받아들이거나 하청계약을 하거나 조사에 동의 혹은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① 미 연방 혹은 주, 미 연방의 영토 및 속령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
- ② 특정인의 신분, 취미, 행동, 사업, 직업, 정직성, 성실, 신용, 신뢰성, 능력, 충실함, 활동, 동선, 행방, 친분관계, 교제, 행위, 성격
- ③ 분실 혹은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처분, 회수
- ④ 인명 혹은 재산에 대한 화재, 모욕, 손실, 사고나 손해 또는 손상의 원인과 책임
- ⑤ 법정, 이사회, 공무원 혹은 조사위원회에 회부시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

### (2) 기본 자격요건

자격요건 역시 각 주별로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 사설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미국시민권자, (ii) 25세 이상의 연령 (iii) 고졸 혹은 동등이상의 교육수료를 한 자로서 (iv)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함

- ㉠ 부정행위 또는 사기
  - ㉡ 정보나 증거의 무허가 누설 또는 매매
  - ㉢ 미연방 혹은 각주의 경찰관이나 직원, 미연방 혹은 각주의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 ㉣ 위험무기의 불법사용, 운반 혹은 소지
  - ㉤ 2개 이상의 음주관련 범죄
  - ㉥ 공중보건 법령하의 규제약물사용
  - ㉦ 폭행
  - ㉧ 미연방 군대에서 군 복무중 불명예 제대를 하지 않았어야 함
- (v) 3년 이상의 기간을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일을 하였거나 하고 있어야 한다.
- ㉠ 다른 주에서 독립적인 사설탐정업에 합법적으로 종사
  - ㉡ 탐정에이전시 운영의 허가 증명서 보유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사설탐정업에 종사
  - ㉢ 도시, 군, 주정부 또는 미연방 정부의 수사관, 형사, 또는 경찰관
  - ㉣ 정부정식인가 대학의 경찰행정, 형사법분야의 학사학위
- (vi) 본 법하에서 제공된 정부보증 채권공탁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의 경우, 사설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i)만 18세 이상의 연령 (ii)캘리포니아주 사법부와 FBI의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State Private Investigator Act, 7526). 뉴 저지주의 경우, 사설탐정이 되기위한 요건으로 25세 미만자에게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개인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직원이나 관리자 중 적어도 1명이 조사원 또는 주, 카운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사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을 시에도 면허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New Jersey State, Private Investigator Act of 1939, 45: 19-12). 사설탐정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음의 중범죄나 위반사항을 범한자와 그로인해 초래하는 법률상의 실격 대신에 유죄선고 후에 뒤따르는 행정사면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rivate Investigator Act, 45: 19-16).

- ㉠ 권총이나 기타 위험 무기의 불법사용, 운반 또는 소지
- ㉡ 강도용 연장을 제작 또는 소지
- ㉢ 장물취득
- ㉣ 건물에 불법 침입
- ㉤ 탈옥을 원조
- ㉥ 습관성 마약의 불법소지 또는 유통
- ㉦ 주 경찰청장이 그 면허에 대한 사설탐정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한 자.

각 주마다 상이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18세~25세의 연령자로서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연방정부에서 취업을 허가 받은 자 이어야하고, 범죄 경력이 없고 도덕적 성격을 지닌 자라면 탐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시험과 면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주에서는 만 몇세이상(연령), 범죄전과가 없고,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가입할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요건만 갖추고 면허를 신청하면 사립탐정이 될 수 있다(황정식, 2005: 37-39).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연령, 캘리포니아 주 사법부와 FBI의 범죄경력조회 통과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외에 일정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경력은 주로 조사관련 분야에서 최소 연간 2,000시간의 유급경력으로 3년간 6,000시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Science Degree소지자는 2년간의 유급경력(4000시간)을, 경찰학, 형법, 헌법, 사법학 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학사 학위소지자, 또는 대학과정을 이수한 후 1년 간의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부자료, California Private Investigator Act, 7541). 이러한 일정경력 요구 외에 2시간의 다지선다(객관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70점 이상의 취득자 만 합격 통보를 받게된다. 시험내용은 법률(헌법, 형법, 사설탐정법)과 규정(규칙), 전문성(Terminology)문제(무기사용관리법, 살인·방화·절도·사기 등 각 분야의 실무에 관한 수사 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보고서 작성), 인터뷰, 증거(수집 및 보존), 위장수사, 감시 등으로서 실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평가한다. 응시자격이 실무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응시자중에는 수사기관의 전·현직 수사관이 많다고 한다. 인디애나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 주 등 일부 주정부는 면허시험없이 일정자격과 경력만으로 면허를 발급하여 주 정부내의 거주자인 주민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이상원·김상균, 2006:58-59).

이들 무시험 면허 발급지역의 면허는 타 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일부 주정부는 면허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관할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 탐정업에 종사하는 일반 탐정 사무원제도를 두고 있다<sup>2)</sup> 일리노이 주의 경우 일반 조사관(탐정)은 면허국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하여야 하며 간단한 시험 및 신원 조회를 거쳐 취업허가증을 받게 된다.

### 4) 교육훈련

미국의 공인 탐정은 기본 자격요건 외에 일정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격요건

2) 일반 조사관(탐정)은 공인면허를 가진 탐정사무소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계약이나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사관의 자격증은 면허가 아닌 취업허가증이다.



이 갖추어지면 주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거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PI Academy)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경력을 쌓거나,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할 수 밖에 없다. 공인 탐정에 대한 교육훈련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공인탐정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펜실바니아주 Lion Investigation Academy의 예

Lion Investigation Academy는 전문대학과정에 준하는 2년간(4학기) 1600시간의 (Investigation & Security Associate Degree)연수교육을 통해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거쳐 탐정면허를 취득하게 되어있다. 이 프로그램 3학점 씩 20개 과목의 총60학점을 취득해야하며, 이 프로그램이 등록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고교 졸업을 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훌륭한 윤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Lion Investigation Academy 내부자료, 2007).

〈표 3-1〉 Lion Investigation Academy의 AST(Associate in Specialized Technology) Degree 교과과정

Semester	교과목	학점	시간
Semester 1	사설탐정개론	3	40
	감시 및 미행 기법	3	60
	응용 시큐리티 I	3	80
	심문 조사기법과 절차	3	80
	심리학 개론	3	100
Semester 2	조사실무I	3	80
	특수업무	3	80
	민간조사	3	70
	통신장비	3	100
	사회학개론	3	100
Semester 3	고소사건조사	3	80
	조사실무II	3	80
	응용시큐리티II	3	80
	시큐리티 예방산업론	3	80
	심리학	3	100
Semester 4	위장조사	3	60
	증거사법절차	3	80
	응용시큐리티III	3	80
	조사실무III	3	70
	사회학	3	100
4 Semester	20과목	60	1600

자료: Lion Investigation Academy 내부자료, 2007.

Lion Investigation Academy에서 AST Degree과정을 마치고 졸업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60학점을 취득해야하고, 4학기 평점을 2.0이상이어야 하며 3년안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각 학기별 교과목과 학점, 시간은 <표 3-1>과 같다.

(2) 캘리포니아주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의 예

캘리포니아 주 소재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는 CMI(Certified Master Investigator)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주코스로서 매주 40시간씩 총400시간을 (오전09:30~오후4:00)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각 주별 교과목과 시간은 <표 3-2>와 같다.

<표 3-2>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의 CMI Training Program

주	과목	시간
1주	인터뷰기법과 보고서작성요령	40
2주	감시기법	40
3주	개인 상해사건조사I	40
4주	개인 상해사건조사II	40
5주	소환장송달 법정절차	40
6주	실종자 찾는요령	40
7주	배경(경력)조사	40
8주	재산찾기와 회수요령	40
9주	범죄수사기법	40
10주	법과 면허제도	40
총 10주	10개 과목	400시간

자료: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 내부자료, 2006.

## 2. 영국의 탐정제도

### 1) 개 요

차치경찰 시스템이 정착되어있는 영국에서는 탐정들의 활동은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경찰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강영숙, 2007: 71~72).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은 사람과 재산의 보호, 움직이지 않는 차량(immobilising Vehicle), 시큐리티 컨설턴트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section3). 영국 역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직경찰이나 헌병 수사관, 정보기관 출신들이 탐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의 전문기법이나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탐정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국가 면허국에

서 발급하는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국가직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NVQ는 특정직업별로 대상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증해주는 5단계로 구성되는 제도이다. NVQ는 국가직업 면허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고 여러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탐정업<sup>3)</sup>에 대해서도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NVQ 3등급을 취득해야만 탐정업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 2) 탐정의 정의와 자격요건, 면허

영국에서는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사람, 사람의 활동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질문, 조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Section 1).

영국에서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신원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범죄경력이 없어야함), 탐정으로서의 적합한 능력보유를 요구한다. 그러나 능력심사방법, 범죄 경력확인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 민간경비산업 면허국) 및 관할 내무성과 탐정협회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강영숙, 2007:74-75).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 제3조에 의하면 영국에서 탐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탐정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탐정업도 포함되는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민간경비산업법)에는 민간경비산업분야의 면허권한은 Security Industry Authority (민간경비산업면허국)에 있기 때문에 탐정면허는 SIA에서 발급된다. SIA는 민간경비산업분야의 인가와 승인에 관련된 임무, 이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활동과 효율성 감시,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훈련기준, 채용관리의 수준설정과 승인, 민간경비산업 기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권고와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chapter 12).

## 3) 교육훈련

탐정이 되기를 원하는 각 개인은 본인의 전문 기술과 능력을 탐정전문 교육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고 NVQ(국가직업인증)도 이러한 교육과 실전경험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탐정교육은 전문협회에서 운영하고있는 교육훈련 program 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Martin Gill and Jerry Hart, 1997). 영국탐정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에서는 여러과정의 교육훈련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교육과정(Investigation Course), 갈등관리교육과정(Conflict Management

3) 영국에서는 일반탐정들이 탐정활동외에 상업정보회사(commercial Intelligence Agency)를 운영할 수 있는데, 국내의 도피사범추적, 비즈니스 정보수집, 잠입근무 등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Course), 집달리교육과정(Bailiff Course), 감시교육과정(Surveillance Courses), 도보 및 차량감시 고급과정(Advanced Foot and Mobile Surveillance), 전자감시과정(Electronic Surveillance), 목격자 증거수집과정(Professional witness Evidence) 등이 개설되어 있다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2006).

여기에서는 지면상 전문조사과정(Professional Investigation Course)과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전문조사과정(Professional Investigation Course)

전문조사과정은 2주간의 과정으로서 이 코스는 공인 탐정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하도록 편성되어있다.

〈표 3-3〉 전문조사과정의 교과목

기간	교과목
2주간	* 조사의 유형
	* 소환장 송달절차
	* 장비운용기법
	* 자료보호
	* 신분보고(status reporting)
	* NVQ(국가직업인증)제도
	* 법적절차
	* 보고서작성요령
* 진술	
* 감시기법	
* 추적기법	
* 경찰과 형사증거의 수집	
* 현장보호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내부자료, 2006.

2주간에 배우는 교과목은 조사의 유형, 보고서 작성요령, 진술, 소환장 송달절차, 감시기법, 추적기법, 장비운용기법, 경찰과 형사증거의 수집, 자료보호, 현장보호, 신분보고(status reporting), NVQ제도, 법정절차 등으로 8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 10일과정의 감시코스(Surveillance Course)

이 프로그램은 10일 과정으로서, 조사팀의 일원으로서 규정에 의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 과정은 4일 과정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조사분야의 NVQ level 3,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4일 과정의 프로그램이 Unit9, 16, 17, 18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입증(evidence)을 해준다면, 이 코스는 교육의 우수성이 인정될때 도보 및 차량 감시분야의 NVQ level<sup>34)</sup> 자격이 부여된다.

4) NVQ는 5단계의 단계별 능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level 1) ~ 5단계(level 5)인데, level 3 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사분야의 level 3는 필수3, 선택4과목의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표 3-4〉 10일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의 교과목

기간	과목
10일	* 계획작성과 브리핑요령
	* 위장비디오 및 사진촬영기법
	* 전자감시기법
	* 고정감시기법
	* 고급도보 및 차량감시기법
	* 관련법규와 증거수집요령
	* 위성차량추적기법
	* 고급소송절차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내부자료, 2006.

10일 감시과정의 교과목은 계획작성과 브리핑요령, 고급도보 및 차량감시기법, 공공수송기관내의 감시기법, 위장 비디오 및 사진촬영기법, 관련 법규와 증거 수집요령, 전자감시기법, 위성차량추적기법, 고정감시기법, 고급소송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호주의 탐정제도

#### 1) 개요

호주는 자격증의 국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간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5년부터 연방정부의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dvisory Board(호주자격구조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AQF)가 있는데 이 AQF가 국가적으로 필수적 교육과 훈련의 모든 자격에 대해 일관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이상원, 2003).

시큐리티 분야는 6등급의 18개의 자격제도로 운영되는데, 자격1급(Certificate I), 자격2급(Certificate II), 자격3급(Certificate), 자격4급(Certificate IV), Diploma, Advanced Diploma 이다(Implementation Handbook,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2002).

AQTF(Australian Qualification Training Framework)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록된 훈련조직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를 제공한다. 각등록된 훈련조직은 주어진 훈련시간과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부하고, 관련된 기록 및 행정적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상원, 2004: 377-379). 탐정제도 역시 3개의 자격제도, 즉 사설탐정 2급, 사설탐정 3급, 사설탐정 4급으로 운영된다.

#### 2) 탐정업의 정의와 자격요건, 면허

호주 시큐리티의 주산업분야는 경비(Guarding), 출입접근 시큐리티(Access Security), 사서탐정 (Investigative services), 시큐리티 사업관리(Security business management)로 분류된다(Western Australia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 Kit, 1999). 또 시큐리티 제공자는 군중관리자(Crowd Controller), 시큐리티 경비원(Security Officer), 사설탐

정 (Private Investigator), 시큐리티회사(Security Firm)로 구분된다(Security Provider ACT, 1993 4 (1)). 이중 사설탐정은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Security Provider ACT 1993, 6 (1)). 시큐리티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허가 필요한데, 그 면허는 군중관리자 면허, 사설탐정면허, 시큐리티 경비원 면허, 시큐리티 회사면허이다.

호주에서 사설탐정이 되기위한 자격요건은 각 주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Queensland 주의 예를 들어보면(Security Provider ACT 1993), (i)만 18세 이상의 연령 (ii)교육훈련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인정된 교육훈련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iii) 범죄경력없어야함 (iv) 면허소지에 적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사설탐정의 면허는 주 경찰국에서 발급되고 통제되어진다.

### 3) 교육훈련과 시험

호주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분야에서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기본틀 내에서 운영하며, 자격증 발급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임은 등록된 훈련조직이나 법규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예로서, Security Academy, TAFE, Security Institute, Private Investigator Academy 등이 해당된다.호주에서 공인 탐정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진 주에서 허가된 사설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주 정부에서 위탁한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certification)을 발부받은 후 주 경찰국에서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공인탐정들의 활동범위는 자신의 면허를 취득한 주에서 제한 되지만 각주에 일정세금을 납부하면 다른 주에서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등록된 훈련조직의 사설탐정 교육훈련시간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Western Australia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표 3-5〉 사설탐정 교육훈련시간

코드	사설탐정급수	시간
PRS20498	사설탐정2급	142
PRS30598	사설탐정3급	302-642
PRS40498	사설탐정4급	622-642

자료: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의 Qualification을 요약정리한 것임, 이상원(2004)에서 재인용.

Western Australia에서는 사설탐정2급은 142시간, 사설탐정3급은 최소302시간, 사설탐정4급은 최소 622시간 교육시키도록 되어있다.

〈표 3-6〉 사설탐정 2급 교과과정의 예

코드	과목	시간
PRSIR13A	정보수집방법 선택	16
PRSIR20A	서면보고서작성 및 편집	20
PRSIR22A	법정에서 사용키 위한 증거준비	16
PRSIR23A	법정에 증거제출	20
PRSIR38A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10
PRSIR15A	실제수사에 의한 증거수집	30
PRSIR17A	인터뷰 방법과 진술	30
계		142

자료: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ining and Implayment, Asset secut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 1999,p.33.

사설탐정2급의 교육훈련 과목은 7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보수집 방법 선택 16시간, 법정에 증거제출 20시간,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10시간, 실제 수사에 의한 증거수집 30시간, 인터뷰 방법과 진술 30시간으로 총 142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표 3-7〉 사설탐정 3급 교과과정의 예

코드	과목	시간
PRSIR 13A	정보수집방법 선택	16
PRSIR 20A	서면보고서 작성 및 편집	20
PRSIR 22A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의 준비	16
PRSIR 23A	법정에 증거제출	20
PRSIR 33A	소규모 팀에 대한 지휘	20
PRSIR 34A	직원감독	20
PRSIR 36A	현장운용의 조직과 모니터(감시)	20
PRSIR 38A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10
PRSIR 14A	감시에 의한 정보수집	30
PRSIR 19A	장비의 선택과 감시차량운용	30
PRSIR 16A	전문적 정보수집장비의 선택과 획득, 보관	40
PRSIR 21A	정보의 저장과 보호	40
PRSIR 28A	고객과의 관계유지	20
계		302

자료: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ining and Emloyment, Asset Secutir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 1999, p.32.

사설탐정 3급의 교육훈련교과목은 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보수집방법 선택 16시간, 서면보고서 작성 및 편집 20시간,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준비 16시간, 법정에 증거제출 20시간, 소규모 팀에 대한 지휘 20시간, 직원감독 20시간, 현장운용의 조직과 모니터(감시)20시간,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10시간, 감시에 의한 정보수집 30시간, 장비의 선택과 감시차량운용 30시간, 전문적 정보수집 장비의 선택과 획득, 보관 40시간,

정보의 저장과 보호 40시간, 고객과의 관계유지 20시간으로 총 302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탐정분야의 감독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 IV.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2005.9.8)과 열린우리당의 최재천의원(2006.3.14)이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상배의원과 최재천의원은 민간조사업법의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민간조사업제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고에서는 용어의 정의,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자격과 시험, 결격사유, 교육과 감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용어의 정의(법제2조)

이상배와 최재천의 법안에서는 민간조사원이란 제3조(업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해 제5조(자격)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민간조사업은 다른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3조(업무)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배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최재천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소관부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2. 업무범위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의 업무범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배안	최재천안
①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①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②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②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③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③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④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④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의 도피사범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⑤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⑤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⑥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⑦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상배안은 ①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②분실 도난 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③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조사, ④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⑤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등과 관련된 조사, ⑥법원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⑦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최재천안은 ①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②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③분실·도난·도피재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④행방 불명자, 상속인, 소유 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 사범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⑤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3. 자격과 시험

자격과 시험에 관해서도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은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1) 이상배안의 자격, 자격시험, 결격사유

이상배안의 자격, 자격시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제5조(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 (2) 제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

- ①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 법무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국가 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범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법의학·법과학·경찰학·범죄학·소방학·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3)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업무보조원)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으로 둘 수 있고 ② 보조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보조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시험(제6조③④)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최재천안의 자격, 자격시험, 결격사유

(1) 제5조(자격)

-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경제협력개발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발급기관을 통하여 국내 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2) 제6조(자격시험)

- ①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검찰청 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형사소송법」 상의특별 사법 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인자
  -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강의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제3조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등의 업무를 취급할 경력이 7년 이상인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제3항 각호중 2 이상의 분야에서 근무한 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3) 제7조(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사무원)

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자를 사무원으로 둘 수 있고 사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시험(제6조⑤⑥)

-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필기)과 제2차 시험(실무) 및 제3차 시험(연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 문제점과 향후과제

### 1. 양 법안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의 문제점으로서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1) 업무범위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최재천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상배안은 ①의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로 포괄적인 규정인 반면에 최재천안은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로 되어 있으며, ⑤의 경우도 이상배안은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조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로 되어 있으나 최재천안은 ④에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 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사설탐정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음을 볼 때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 규정보다는 구체적 명시 규정이 업무의 명확성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 2) 자격과 시험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은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천안의 제5조②에서는, 경제개발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자격증(Certificate)을 보유한 자가 국내 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외국에서 발급되는 자격증(Certificate)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취업허가증 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경제개발 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험없이 경력 만으로 자격취득이 되는 지역, 등록 만으로도 자격취득이 되는 지역, 공인자격없이 사설교육기관의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한 지역 등 민간조사원의 자격수준은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업계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설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자격취득 프로그램은 일부국가의 경우, 자격 발급에 필요한 1-3주의 연수과정을 마치고 얼마간의 돈을 내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전대양, 2006: 15-16). 외국 자격증의 국내자격증의 전환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자격 실시와 관련하여 이상배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고 되어있고 최재천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바, 학문적으로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의 감시감독기관인 경찰청장이 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서는 이상배안은 제6조②호에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실무능력과 연구경력,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필요이상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민간조사업계로의 진출을 막는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최재천안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제6조에 실무능력과 연구경력이 있는자에 대해 1차시험 면제자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재천안 역시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경력이나 연구경력 만으로 국가자격 검증과목을 면제해 준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전대양, 2006:16-17)고 생각한다.

## 2. 향후과제

민간조사원의 자격은 민간조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지식, 관련법규의 이해, 전문성이 있는사람이면 합격하여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임을 볼때,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역시 이러한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배워서 전문성을 취득하고 응시자격을 갖추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민간조사업은 향후 전문 업무영역별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밝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민간조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 1) 업무범위

양 법안의 업무범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포괄적 규정보다는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해 놓음으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나 명확성 면에서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의 사망, 상해, 실종, 방화,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범죄행위와 위법행위, 이에 관련된 미제사건의 조사
-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사이버범죄, 기업회계부정 등에 대한 위법행위의 조사
- 분실,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 합법적인 기초자료나 정보의 사실확인
- 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 소재가 불명한 사람의 소재파악
- 법원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 2) 자격과 시험

민간조사원의 자격은 자격제한을 엄하게 하여 현장의 실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편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적합할 것이다.

이상배안은 제6조의 ②에

- 법무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소속 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소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대학에서 형법학, 법의학, 법과학, 경찰학, 범죄학, 소방학, 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이상인자
-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와 같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응시지원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의 진출을 막는 것이고 이 분야의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수가 있다. 따라서 최재천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반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연구·현장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접근법이 좋을 것이다. 즉,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만 25세 이상의 국민(군필자 연령)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고 연구경력이나 현장경력이 일정기간 있는 사람에게 1차 시험의 면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의 면제도 수사·정보분야의 현장경력과 경찰학·형사학·형사법분야의 연구자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국가 정보원 소속 공무원,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 및 수사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대학에서 경찰학·형사학·형사법 또는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연구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제3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그러나 최재천안 제15조②에서 언급한 경제개발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제도가 있는 나

라 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국내 자격증 전환은 앞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역시 민간조사제도가 민간경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경비를 전담하는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3) 시험과목과 기본교육

#### (1) 시험과목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거나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이상원·김상균, 2006:52-53). 민간 조사원 자격제도는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지식, 기술, 소양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원이 되기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시험을 요구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험과목으로 법률과목(헌법, 형법, 탐정법), 규정(규칙), 실무 및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대처능력, 인터뷰기법, 증거수집 및 보존, 위장수사, 감시기법 등을 요구하고 있고, 각 주의 사설탐정 아카데미에서도 사설탐정개론, 감시 및 미행기법, 심문조사기법, 조사실무, 시큐리티 예방산업론, 심리학, 사회학 증거사법절차 등의 과목을 교과과목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탐정Academy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인증)3급을 취득해야만 탐정업을 할 수 있다. 탐정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법과절차, 조사유형, 진술, 증거수집 방법, 보고서 작성요령, 감시기법, 추적기법, 현장보고 등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도 탐정이 되기를 원하는 개인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 한 후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받은 후 각 주 경찰에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탐정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정보수집방법, 보고서 작성, 관련법률, 법정에서 사용키 위한 증거수집, 인터뷰 방법, 진술, 감시기법, 정보수집, 획득, 보관, 정보의 보호, 고객과 관계유지, 현장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의 민간조사원(탐정)이 되기 위한 시험과목이나 탐정자격 획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탐정법, 관련 법률과목, 규정이나 규칙등 포함하는 이론과목과 인터뷰기법, 수사기법, 정보수집, 미행 및 감시기법, 장비운용, 조사실무, 증거사법절차, 보고서작성 등을 포함하는 실무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과목에 준해서 시험과목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은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으로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도 충분하고 시험 합격자에게 일정기본교육(연수)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시험과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은 모두5과목으로 한다. 1차 시험은 이론과목으로 민간조사학, 관련법률(헌법, 형사법, 민간조사업법, 관련법률 포함)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범죄학(범죄심리포함)범죄 예방학 중 택일하도록 해서 3과목으로 한다.

2차시험은 실무과목으로서 민간조사 현장운용론과 조사실무(조사기법, 서류작성, 보고서작성 등 포함)의 2과목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민간조사원의 시험과목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1차시험은 이론과목으로 2차시험은 실무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2차시험은 단답형을 가미할 수도 있게하고,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실시하되,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70점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시험과목의 예

시험 과목	1차시험	2차시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학</li> <li>○ 법률(헌법, 형사법, 민간조사업법, 관련법률)</li> <li>○ 범죄학(범죄심리포함), 범죄예방학 중 택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현장운용론</li> <li>○ 정보 및 조사실무</li> </ul>

## (2) 교육훈련

### 가) 관리감독의 주무관청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민간조사원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조사원(공인탐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는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료를 자격증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무가 고객의 생명과 재산등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격한 교육훈련과 철저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의 관리감독은 민간조사제도의 취지와 업무범위, 학문적 영역, 국민의 법률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원의 연수 책임을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관련 협회나 사설전문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 자격자의 관리형태를 고려해 볼 때 경찰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 나) 교육훈련기관

이상배안과 최재천안은 자격시험의 절차에서 3차시험은 연수교육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연수교육이 합격여부에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2차 시험후 합격자가 결정되면 그 합격자에 대해 연수교육(민간 조사원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양 법안에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민간조사업에 종사할 업무 보조원(사무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업무보조원(사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와 업무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이상원·김상균, 2006:67-71) 현재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인 경찰청에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가) 민간조사원 기본 교육훈련

민간조사원 시험(1차, 2차)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조사원 기본교육 훈련은 민간조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Program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사망, 상해, 실종, 방화,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와 위법행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위법행위의 조사, 분실, 도난, 도피자 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합법적인 기초자료나 정보의 사실확인, 소재가 불명한 사람의 소재파악,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등 일반적인 단순업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은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민간조사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목과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각각의 전문교육기관과 노하우의 전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습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상원 · 김상균, 2006:70-71).

〈표 4-2〉 민간조사원 신임교육훈련 교과과정의 예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인권보호	3	인터뷰기법 및 진술	15
직무윤리	3	조사방법	15
고객과의 관계유지	3	조직영역관리	4
리더십	3	현장조사활동	15
관련법률의 이해	15	증거수집요령	15
정보수집의 방법 및 선택	12	정보·보안	4
감시, 미행, 관찰기법	12	실종자 찾는 요령	4
감시장비운용	3	보고서 작성 및 기록	4
형사사법 절차	3	입교·졸업식	3
범죄자의 심리파악	5	평가	1
계		142	

민간조사원 신입교육훈련 교과과정은 외국의 공인탐정 교육훈련시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민간조사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과목과 시간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조사원 신입교육훈련 교과과정으로 민간조사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직무소양과 실무과목으로 총 18개 과목에 142시간으로 정하여 보았다. 소양과목으로 인권보호(3), 직무윤리(3), 리더십(3), 고객과의 관계유지(3)으로 4개과목 12시간을 정하였다. 실무과목으로 관련법률의 이해(15), 정보수집방법 및 선택(12), 감시장비운용(3), 형사사법절차(3), 범죄자의 심리파악(5), 인터뷰 기법 및 진술(15), 조사방법(15), 조직영업관리(4), 현장조사 활동(15), 증거수집요령(15), 정보·보안(4), 실종자 찾는 요령(4), 보고서 작성 및 기록(4) 등 13개 과목 126시간이다. 그리고 입교·졸업·평가가 4시간으로 되어있다.

(나) 업무보조원(사무원) 기본교육훈련

업무보조원은 민간조사원을 보좌하는 직원 또는 민간조사원의 감독이나 지시하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를 업무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이상원·김상균, 2006:72-73). 업무보조원 기본교육훈련은 민간조사원 기본교육훈련에 준하는 교과과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이 민간조사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소양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능력의 향상은 민간조사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민간조사원의 책임하에 현장경험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무보조원 기본교육훈련 교과과정은 관련법규의 이해(4), 정보수집의 방법 및 정보선택(4), 감시 및 이행, 관찰기법(4), 감시장비운용(2), 인터뷰 기법 및 진술(4), 조사방법(4), 현장조사활동요령(4), 직무윤리(2), 인권보호(2), 보고서 작성·기록(4), 입교·수료·평가(4)등 13과목 50시간으로 민간조사원과 업무보조원은 1년에 8시간씩의 보수교육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표 4-3〉 업무보조원 기본교육훈련 교과과정의 예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인권보호	2	감시장비운용	2
직무윤리	2	인터뷰기법 및 진술	4
사무관리	2	조사방법	4
관련법규의 이해	4	현장조사활동요령	4
정보수집 방법 및 정보의 선택	4	증거수집요령	4
감시 및 미행, 관찰기법	4	정보보안	2
실종자 찾기요령	4	보고서 작성과 기록	4
입교·졸업·평가	4		
계		계	50

## V. 결 론

21C의 시대는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탐정분야 역시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의 흐름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역시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업이 다양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자격요건과 자격증 부여에 있어서 기본자격외에 일정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면허가 발급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일정 자격과 경력요구 외에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에 대해 면허를 발급되는 수가 있어서 각 주별로 운영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탐정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인증) 3급(level III)을 취득한 후 면허를 신청하여 탐정활동을 할 수 있다. 호주는 각 주 정부로부터 권한과 자격이 주어진 탐정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고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이수후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이 부여되고 주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고 탐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시험을 치러서 합격이 되면 소정의 연수(신입교육훈련)을 거쳐 민간조사원의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민간조사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민간조사원의 직무가 국민의 법률생활과 인권,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와 민간조사원들의 교육훈련과 전문성향상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 시험제도, 현장교육훈련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교과목, 시간편성 등)의 개발, 민간조사원 교육훈련기관 위탁 지정요건의 엄격한 적용, 사후 평가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준비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시도되는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삼위일체가 된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호가 개방되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활동이 가능할 때 민간조사업 분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효은(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서울:동아일보사.
-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 개론, 서울:백산출판사.
-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뜬다, 서울:굿인포메이션.
- 임준태·이동영 공역(2003). 탐정학개론, 서울: 좋은세상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용인대학원.
- 김원태(2006). “민간조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대한민간조사학회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대한 민간조사학회.
- 이상원(2003). 시큐리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안 행정학회보 제15호, 한국 공안 행정학회, pp.116-118.
- \_\_\_\_\_ (2004).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pp375-379.
- \_\_\_\_\_ (2003). 시큐리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1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_\_\_\_\_ (2005). 민간경비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p.104-107.
- 이상원·김상균(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 전대양(2006).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 조용철(2006). “공인 탐정 인력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민간경비학회, 제9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자료, pp.117-133.
- 황정익(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5-1, 치안정책연구소.
- Martin Gill and Jerry Hart (1997), Policing as Business: The Organisation and Structure of Private Investigation, Policing and Society, VOL.7.
- Robert D. McCrie(2001), Security Operation Management, MA: Butterworth Heine mann.
- California State Private Investigator ACT
- Michigan State Private Detective License ACT
- Lion Investigation Academy 내부자료
-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 내부자료
-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of 2001
- Keith Ashley(2001), The Private Investigator’s Handbook, sydney: Southwood Press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system in Korea**

Lee, Sang-Won · Park, Yun-Kyu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 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 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 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Key word: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Security, Certificate System, Security training, Professional.**